

# 의료보험제도 해설

최 수 일  
(보건사회부 사회보육국장)

- I. 머릿말
- II.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 가. 적용범위
  - 나. 보험관리
  - 다. 보험급여
  - 라. 보험재정
  - 마. 기 타
- III. 맺는 말

## I. 머릿말

오늘날의 人間生活에 있어서 醫療問題는 衣食

住 못지 않게 그 比重이 커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社會의 發展에 따라서 醫療問題의 解決을 爲한 努力은 國家的인 것으로 되어 소위 先進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를 爲한 制度가 社會化되어 疾病이나 負傷 등으로 부터 安心하고 日常生活을 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1977年은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制度에 있어서 새로운 章을 열게되는 劃期的인 한 해가 될 것이다. 卽 政府는 今年부터 國民에 대한 醫療保障을 擴大하기로 하였으니 그 하나가 生活保護對象者와 一定所得水準 以下の 階層에 대한 公的 扶助方式에 의한 醫療保護制度를 지난 1月 1日부터 施行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一定所得水準 以上の 勤勞者 및 地域住民에 대하여는 社會保險方式에 의한 醫療保險制度를 導入하여 오는 7月 1日부터 實施하기로 한 것이 그 것이다.

이러한 國民에 대한 醫療保障을 위한 政府의 施策이 可能하게 된 것은 지난 10餘年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에 힘입은 것이며 이는 곧 經濟發展에 따라 蓄積되는 富를 社會化함으로써 國家의 目標인 國民福祉를 極大化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의 導入이 우리가 處하고 있는 現在의 狀況에 必要한 것인가 또는 그 內容과 方法이 現實에 適合한가 등의 問題는 政策形成過程에서 많은 論議를 거쳐 立法化 된 것으로서 지난해 12月 23日字 및 今年 3月 12日字로 各各 改正公布된 醫療保險法 및 同法施行令이 政策의 具體的인 表現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制度가 立法化된 지금에 있어서 政府나 國民은 어떻게 하면 制度의 基本目標인 國民에 대한 醫療保障을 極大化하며 또 한 어떻게 하면 새로 導入한 制度를 하루속히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定着化 하느냐에 關心을 가지고 制度를 發展시켜 나가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立案者인 政府는 制度에 關與하는 모든 國民에게 그 趣旨를 正確히 알리고 또한 그와 關係되는 國民은 그 참뜻을 理解하게 함으로써 制度를 올바르게 發展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制度의 내용을 說明하고 이 制度에 關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惠澤을 받게 되며 또 나아가서 어떻게 利用하여야 하는가에 關하여 보기로 하겠다.

## 2. 醫療保險制度의 概要

### 가. 適用範圍

本 醫療保險의 適用對象은 全體國民으로 하되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등과 같이 다른 法律體系에서 그들의 醫療保障문제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를 除外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實施範圍는 經濟的·社會的 與件에 따라서 段階的으로 擴大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即, 制度의 施行初年度인 今年에는 單一事業體로서 500人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경우나 一定 工業團地에 入住하고 있는 事業體의 경우에는 반드시 本法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에 의한 醫療保險事業을 實施하도록 하였으며 該 以外의 事業體나 地域의 自營者는 任意的으로 醫療保險事業을 實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詳하여야 할 事項은 勤勞者나 地域住民의 醫療保障은 世帶單位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地域住民에 있어서는 後述하는 保險料가 世帶員數를 基準으로 하는 定額制이기는 하나, 勤勞者의 경우에는 該 勤勞者의 扶養家族數에 關제없이 該가 醫療保險組合에 納付하게 되는 保險料는 그의 報酬(賃金)를 基準으로 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 나. 保險管理

醫療保險을 爲한 事業의 管理主體는 國家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의 醫療保險制度에 있어서는 構成員의 自律에 의하여 運營할 수 있는 組合制度를 採擇함으로써 스스로의 利益을 스스로 管理運營하도록 하는 即 運營의 民主性을 最大로 確保코자 한 것이다. 그러한 組合은 事業體 혹은 地域社會를 單位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各各의 事業體 또는 地域社會의 與件에 適合한 給與水準을 維持하고 自律의 調整에 의한 保險財政의 彈力性을 確保하여 安定된 運營을 期할 수 있다. 特히 事業場組合에 있어서는 該 意思決定機關이나 執行機關의 構成에 있어 勞·使兩側에서 同數의 人員을 選出하도록 勞使間의 協調를 바탕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使用者에게는 該가 使用하고 있는 勤勞者의 保險料의 절반을 負擔하게 하여 經營人으로서의 社會的 責任을 義務化 하고 同時에 勤勞者의 醫療保障에 關한 權益을 侵害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運營에 있어서는 醫療保險組合을 代表하는 代表理事가 될 수 있는 者를 選定할 수 있는 權限을 賦與하는 등과 같이 勞使間의 힘의 均衡을 制度化 하고자 한 것이다.

### 다. 保險給與

保險給與는 疾病·負傷·分娩과 같이 診療行爲가 要求되는 경우의 給與와 該 以外에 死亡의 경우는 葬祭에 所要되는 費用 또는 傷病으로 因하여 生活資金源이 斷切되었을 경우의 生活費에 相當하는 傷病手當의 給與가 있다. 疾病·負傷·分娩에 대한 療養給與나 分娩給與는 法定給與로서 法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반드시 給與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葬祭費 또는 傷病手當은 組合財政이 許容하는 경우에 위의 法定給與에 附加的으로 組合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給與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法定給與인 療養給與나 分娩給與는 診療行爲가 必要하므로 이는 組合이 市·道의 承認을 얻어 指定하는 醫療機關이나 組合이 開設

運營하는 醫療機關 卽 療養取扱機關을 通하여 診療行爲라고 하는 現金이 아닌 現物給與를 함을 原則으로 하고 不得已 한 경우에는 事後에 現金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하였다.

療養取扱機關의 指定은 組合이 市·道の 承認을 얻어 指定하도록 하였으나 그 指定에 있어서는 受患者인 被保險者나 被扶養者가 利用함에 便利하도록 그 地域的分布, 專門科目 및 醫療機關의 診療能力등을 考慮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診療에 所要된 費用은 療養取扱機關이 組合에 請求를 하면 이에 관하여 審査를 하여 支給하게 된다. 여기서 組合의 審査의 내용은 療養取扱機關의 診療가 給與基準(이 基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도록 되어 있다)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또 保險醫療酬價基準에 의해 算定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檢討하는 것이 主로 되며 나아가서 診療의 內容이 不當하지 아니한가에 관하여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로도 될 수 있다고 하겠다.

診療費用의 負擔은 組合 卽, 保險者가 全額을 負擔하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하겠으나 그러한 理想的인 制度를 採擇할 수 없는 것은 施行初年度에 있어서 組合財政의 安定을 確保하는 것이 主로 되더라도 큰 문제이며 또한 本人이 一定額을 負擔하도록 하는 것은 受患者 本人이 醫療機關에 訴에 없이 出入하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는 데에 큰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診療費用에 대한 本人一部負擔率은 入院·外來別로 區分하여 이를 다시 被保險者 被扶養者에 있어서 서로 다른 率을 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卽, 入院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費用金額의 100分の 30의 範圍內에서, 被扶養者는 100分の 40의 範圍內에서, 그리고 外來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費用全額의 100分の 40의 範圍內에서, 被扶養者는 100分の 50의 範圍內에서 各各 組合의 財政 形편에 따라 定하도록 하고 있다.

療養給與나 分娩給與등의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條件은 被保險者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그 資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給與를 制限할 수도 있으며 또한 資格喪失後에도 給與를 받을 수 있는 例外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 卽, 被保險者나 被扶養者의 故意의 犯罪行爲에 의하여 疾病·負傷이 惹起된 경우라든가 業務上의 災害로 因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등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나 補償을 받는 경우,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療養費를 支給받는 경우 등과 같이 그러한 保險事故에 대하여 補償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2重의 給與를 避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資格이 있는 경우에도 療養期間은 6月로 限定하고 있으니 이는 거의 대부분의 疾病이 6個月 정도면 治療될 수 있다는 理由도 있으나 費用의 本人一部負擔制度와 같이 施行初에 있어서의 保險財政의 安定을 考慮한 것으로서 制度가 定着되고 發展함에 따라서 이러한 期限의 制限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被保險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以上 被保險者의 資格을 가지고 있던 者로서 療養取扱機關에서 療養中에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비록 資格을 喪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앞서 말한 療養할 수 있는 期間동안 療養給與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1년 以上の 被保險者의 資格을 가지고 있던 者가 資格喪失後 3月以內에 分娩한 때에는 分娩給與나 分娩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했다.

#### 라. 保險財政

組合의 財政은 被保險者로부터 徵收하는 保險料와 國庫로부터 交付되는 負擔金이 收入의 大部分으로 되며 이로써 保險給與에 所要되는 費用과 事務에 必要한 費用에 充當하게 되는 것이다.

保險料는 제 1종 組合인 事業場組合에 있어서는 被保險者의 報酬의 3~8%의 範圍內에서 組合에서 定하도록 하고 제 2종 組合인 地域組合에 있어서는 被保險者와 被扶養者數를 基準으로 定

款으로定하는定額으로하도록하였다.

保險料는定率制로하든定額制로하든간에이는被保險者와被扶養者의醫藥即保險給與에所要되는費用을判斷하여決定하여야할問題로서財政收支의安定에焦點을두어야할것이다. 1種組合에있어서는報酬를保險料의算出基礎로하고있기때문에每月變하는報酬額에保險料率을그때그때에適用하여計算하여야하는不便을없애므로서組合事務의簡素化를期하기위하여한번결정하면1年間을適用할수있는標準報酬制度를擇하고있다. 標準報酬制度를擇하는또하나의理由는報酬의上·下限線을定하므로서受惠者의保險料負擔에比하여지나친不均衡을防止함에있다고할것이다. 그리하여報酬를20,000원에서400,000원까지30등급으로나누어400,000원以上的報酬를받는경우라도400,000만원에대한保險料를負擔하도록定하고있다.

특히施行初에있어서保險財政의安定은醫療保險制度의健實한發展에必要不可缺한點으로서이를위하여保險料率의決定은3~8%의範圍로하였으며앞에서말한바와같이本人負擔率도30%~50%의範圍로하고나아가서財政의一時的인赤字에대하여는一時借入을할수있도록하였고또保險財政의安全瓣으로서의準備金에서轉入하여赤字를補願할수있는制度的裝置를마련하였다.

#### 마. 其 他

(1) 被保險者나被扶養者기타關係者에대한被保險者의資格, 保險料 또는保險給與에관한處分에不服이있는경우에는이에관하여異議를申請할수있도록하였으며이의裁決을위하여는市·道에各界代表로構成되는醫療保險審査委員會를設置하도록하였다.

(2) 組合에대한指導監督은組合의設立, 定款變更, 解散認可등基本的인事項에관하여는保健社會部長官이가지고其他大部分의權限은

市·道에委任하고있다.

(3) 그밖에醫療保險制度의效率인實施에있어서被保險者, 使用者등에各種의義務를賦與하고있으며이들義務의履行에怠慢하다든가또는履行치아니하는경우에는罰則을두고있다. 그하나의例가使用者에게는勤勞者가法에의하여被保險者로되는것을妨害하거나負擔金の增加를忌避할目的으로勤勞者의昇給등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體刑인6月以下の徵役に處할수있도록規定하고있는것이다.

### 3. 맺는 말

以上에서今年부터實施될醫療保險制度의內容을說明하였으나問題는어떻게하면이制度를하루속히우리의現實에맞도록定着發展시켜나아가야할것이냐가問題라고머릿말에서言及하였듯이이를위하여는政策當局이繼續努力을하여야함은두말할必要가없는바이지만이制度에관련되는모든關係人의姿勢가이에못지않게重要하다고할것이다.

即, 受惠者인被保險者나被扶養者는어느정도의不便이있더라도이를참아주어야하는同時에先進國에서보는社會保障制度에 의존하려는習性은아예생각하지말아야할것이며, 使用者는現代的인經營人으로서진심으로自己가屬屬하는勤勞者를위한努力을함으로써그事業이번창할수있다는點을認識하여야할것이다. 특히醫藥人의경우에는制度의趣旨를보다더높은次元에서생각하여個個人의利益에급급하는일이없도록하여社會적으로信賴받고尊敬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어느制度의施行에있어서도그러하지만醫療保險의경우는全國民이對象이되고있으므로더욱그러하다고할것이다. 이는다시말해서모든關係者가本制度에積極적으로參與하므로서全體國民의健康生活을保障하고자하는本制度의보다착실하고보다빠른現實에의定着이可能하다고할것이다.